

금천어르신복지센터(어르신복지센터, 50+센터)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어르신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2.9.30.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 중장년층 및 어르신들이 인생후반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
3. 위탁개요

가.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

| 소재지 | 시설규모 (연면적) | 시설장 | 개관일 | 운영인력 | 위탁기관 | 위탁기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범안로 17길22 | 지하1층~ 지상8층 (1,781㎡) | 김미성 | 2020. 9. 1. | 12명 |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(이사장:강순모) | 2019. 10. 1.~ 2022. 9. 30. (3년) |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1) 위탁기간 : 2022. 10. 1. ~ 2027. 9. 30.(5년)
- 2) 위탁업무
 - 50+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·시행
 -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인사 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
 - 노년층 취미·여가·건강관리 등 지원을 위한 사업
 -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, 경력개발,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 사회공헌 활동,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
- 대외 파트너십 구축 및 대외기관 등의 협력사업 추진
-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일자리 발굴·연계
- 그 밖에 센터 관리,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다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 여부 결정
(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)

4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가.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천어르신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
- 나.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유지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책임감 있는 공간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

다.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: 양호(평가점수 91.25점)

5. 관계법령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다. 서울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
관 계 법 령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·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제9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7.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
8. 예산지원 내용

9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동안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,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